# 제113차(2017학년도 제2회)
#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회 회의록

| 이사정수 8인 | 재적이사 8인 |
|---|---|
| 감사정수 2인 | 재적감사 2인 |

1. 일　　시 : 2017년 4월 20일(목) 17:00~18:10(회의소집 통보일 : 2017년 4월 11일)

2. 장　　소 :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복합문화공간(성수동)

3. 참석인원 : 이사 7인　　정희경, 박상증, 구성회, 임청산, 이인호, 김형식, 이순자
감사 1인　　장지환

4. 불참인원 : 이사 1인　　이병훈
감사 1인　　이민재

5. 안　　건 : 제1호안 : 임원 개선의 건
제2호안 : 2016회계연도 법인 및 학교회계 결산(안) 심의의 건
제3호안 : 2017학년도 1차 불용물품 처분 심의의 건
제4호안 : 정관변경(안) 심의의 건
제5호안 : 대학 정원조정(안) 심의의 건
제6호안 : 기타 안건

6. 회의내용

개 회 기 도 : 박상증 이사가 개회기도를 하다.

성 원 보 고 : 실무자가 학교법인 이사 8인중 이사 7인과 감사 1인이 참석하여 정관 제28조에 의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학교법인 청강학원 제113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.

전차회의록채택 : 실무자가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이사장이 채택 여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다.

업 무 보 고 : 실무자는 법인업무에 관하여, 이수형 총장은 학교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니

| 간서명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|---|---|---|---|
|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
전원 찬성으로 접수하다.

제1호 안건 : 임원 개선의 건

정희경 이사장 : 임원 개선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, 실무자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실무자 : 임원 임기만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, 이사 6인(이사장 및 개방이사 1인 포함)을 선임해야 함을 설명하다. 이사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음을 보충 설명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는 복수로 추천을 하였음을 부연 설명하다. 먼저 개방이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.

이순자 이사 : 개방이사로 4년의 임기를 마쳤으며, 건강상의 이유로 연임할 수 없음을 설명하다.

이인호 이사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이사 2인중 이장우 후보자를 개방이사로 추천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물어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개방이사로 이장우 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임청산 이사의 동의와 김형식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이의없이 찬성 가결하다.

실무자 : 2017년 7월 18일자로 구성회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설명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먼저 구성회 이사의 퇴장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(구성회 이사 퇴장하다.) 구성회 이사의 선임 건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이순자이사의 동의와 박상증 이사의 재청으로 구성회 이사를 재선임할 것을 이의없이 가결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원안 가결을 확인하고 구성회 이사의 재입실을 요구하다. (구성회 이사 입실하다.)

실무자 : 2017년 7월 18일자로 임청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설명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먼저 임청산 이사의 퇴장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(임청산 이사 퇴장하다.) 임청산 이사의 선임 건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구성회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으로 임청산 이사를 재선임할 것을 이의없이 가결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원안 가결을 확인하고 임청산 이사의 재입실을 요구하다. (임청산 이사 입실하다.)

실무자 : 2017년 7월 18일자로 이병훈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을 설명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이병훈 이사의 선임 건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구성회 이사의 동의와 박상증 이사의 재청으로 이병훈 이사를 재선임할 것을 이의없이 가결하다.

실무자 : 2017년 7월 18일자로 김형식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을 설명하다.

김형식 이사 : 일신상의 이유로 다음 임기는 할 수 없음을 설명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김형식 이사의 후임으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을 설명하다.

구성회 이사 : 신임 이사 후보로 세종대학교에 재직중인 이선호 이사를 추천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이선호 이사의 선임 건에 관한 의견을 물으니 이순자 이사의 동의와 임청산 이사의 재청으로 이선호 이사를 선임할 것을 전원 찬성으로 이의없이 가결하다.

실무자 : 2017년 7월 18일자로 정희경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설명하다.

| 간서명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|---|---|---|---|
|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
정희경 이사장 : 지금은 본인이 퇴장할 차례라고 설명한 후 퇴장하다.

실무자 : 회의를 주재할 의장을 선임하여 줄 것을 이사분들께 요청하다.

박상증 이사 : 구성회 이사를 추천하니 이순자 이사의 동의와 김형식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구성회 이사가 의장을 맡다.

구성회 이사 : 정희경 이사를 중임하고 상근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이순자 이사의 동의와 임청산 이사의 재청으로 정희경 상근이사의 재선임을 전원 찬성하여 이의없이 가결하다. 원안가결을 확인하고 정희경 이사장의 재입실을 요구하다(정희경 이사장 입실하다).

**제2호 안건 : 2016회계연도 법인 및 학교회계 결산(안) 심의의 건**

정희경 이사장 :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,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장지환 감사 :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와 내부감사에 의한 감사가 실시 되었고, 법인(일반/수익사업)회계 및 학교(등록금/비등록금)회계 감사결과 문제없음을 설명하다.

실무자 : 2016 회계연도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.
예산 초과된 과목이 있어서 관내에서 일부 목간전용이 있음을 부연설명하다.
(법인일반회계 자산 / 부채 24,125,692 천원 / 법인수익사업회계 자산 / 부채 284,370천원)

교육지원처장 : 2016 회계연도 등록금 및 비등록금 회계 자금 결산(안)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다.
예산 초과된 과목이 있어서 관내에서 일부 목간전용이 있음을 부연설명하다.
(등록금회계 자산 / 부채 47,936,812천원, 비등록금회계 자산 / 부채 36,419,623천원)

정희경 이사장 : 2016 회계연도 법인 및 학교회계 자금 결산(안)에 관하여 의견을 묻고 안건처리를 요청하니, 이순자 이사의 동의와 구성회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제3호 안건 : 불용품 처분 심의의 건**

정희경 이사장 :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, 교육지원처장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교육지원처장 : 대학 불용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다.(취득가액 164,567천원, 감가상각비 124,617천원)

정희경 이사장 :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성을 기할 것을 교육지원처장에게 요청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대학 불용품 처분에 관한 의견을 묻고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임청산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.

**제4호 안건 : 정관 변경(안) 심의의 건**

정희경 이사장 : 제4호 안건을 상정하고, 실무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실무자 : 주소 표기방식의 변경과 관할청 부서명 변경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변경

|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|---|---|---|---|
| 간서명 | | | |

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다. (신구조문대비표 별첨)

정희경 이사장 : 정관 변경(안)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, 박상증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.

제5호 안건 : 대학 정원조정(안) 심의의 건

정희경 이사장 : 5호 안건을 상정하고, 정책 부총장에게 세부내용의 설명을 요청하다.

정책 부총장 :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대학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다.(2017년 입학정원의 7% 감축, 2018년 추가 3명 감축, 2019년 전공분리)

정희경 이사장 : 정원조정(안)에 대해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, 박상증 이사의 동의와 이순자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.

간서명대표자선임 : 정희경 이사장이 학교법인이사회회의록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중 3인 이상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, 구성회 이사, 임청산 이사, 장지환 감사를 추천하니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다.

**폐회선언** : 정희경 이사장이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임청산 이사의 동의와 이순자 이사의 재청으로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18시 10분이었다.

위의 사실을 확인함.

2017년 4월 20일

|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|---|---|---|---|
| 간서명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
학교법인 청강학원

이사장 정 희 경

이 사 김 형 식

이 사 박 상 증

이 사 이 순 자

이 사 구 성 회

이 사 임 청 산

이 사 이 인 호

감 사 장 지 환

별첨 : 1. 제113차 이사회 회의자료 1부. 끝.

| 간서명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|---|---|---|---|
| | | | |

#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**제4조(주소)**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산 37번지에 둔다(93.9.17개정)(96.10.7개정) | **제4조(주소)**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-94에 둔다(93.9.17개정)(96.10.7개정)(2017.4.21.개정) |
| **제5조(정관의 변경)**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확정하고,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2001.2.20.개정) (2008.1.2.개정) (2009.2.27.개정)(2017.4.21.개정) | **제5조(정관의 변경)**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확정하고,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(2001.2.20.개정) (2008.1.2.개정)( 2009.2.27.개정)(2017.4.21.개정) |
| **제34조(수익사업체의 주소)** 제 33조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산 37번지에 둔다.(93.9.17개정) (98.9.5개정) | **제34조(수익사업체의 주소)** 제 33조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-94,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4길 13에 둔다. (93.9.17개정) (98.9.5개정)(2017.4.21.개정) |
| **제36조(해산)**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(2009.2.27개정) | **제36조(해산)**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(2009.2.27개정)(2017.4.21.개정) |
| **제37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~~과학기술~~부 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.(2001.2.20.개정)(2009.2.27.개정) | **제37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. (2001.2.20.개정)(2009.2.27개정)(2017.4.21.개정) |
| **제38조(청산인)**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교육~~과학기술~~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2001.2.20개정)(2009.2.27개정) | **제38조(청산인)**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2001.2.20개정)(2009.2.27개정)(2017.4.21.개정) |
| **제39조의 3(신규채용 등)** ① 생략<br>② 생략<br>③전문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(2002.5.28 신설)<br>1. 기초심사 :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<br>2. 전공심사 :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<br>3. 면접심사 :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 | **제39조의 3(신규채용 등)** ① 생략<br>② 생략<br>③전문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.(2002.5.28 신설)<br>1. 기초심사 :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<br>2. 전공심사 :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<br>3. 면접심사 :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 |

| 간서명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|---|---|---|---|
|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성 등의 심사 | 성 등의 심사 |
|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 법인의 임·직원과 본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·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.(2002.5.28 신설) |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 법인의 임·직원과 본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·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.(2002.5.28 신설)(2017.4.21.개정) |
| ⑤ 생략 | ⑤ 생략 |
| ⑥ 생략 | ⑥ 생략 |
| **제40조(휴직의 사유)**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대학교원의 경우,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고,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 | **제40조(휴직의 사유)**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대학교원의 경우,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고,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 |
| 1. 생략 | 1. 생략 |
| 2. 생략 | 2. 생략 |
| 3. 생략 | 3. 생략 |
| 4. 생략 | 4. 생략 |
| 5. 생략 | 5. 생략 |
| 6. 생략 | 6. 생략 |
| 7. 생략 | 7. 생략 |
| 8.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| 8.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(2017.4.21.개정) |
| 9. 생략 | 9. 생략 |
| 10. 생략 | 10. 생략 |
| **제49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**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 **제49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**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| 1.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원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| 1. 생략 |
| 2.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, 실·처장 등의 보직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동의에 관한 사항(2006.11.24 개정)(2009.2.27개정) | 2. 삭제(2006.11.24. 개정)(2009.2.27.개정)(2017.4.21.개정) |
| 3.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| 3. 생략 |
| 4. 정관 제39조의4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| |

| 간서명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(2002.5.28 신설)<br>②생략 | 4. 생략<br>②생략 |
| **제73조(총장 등)** ① 생략<br>② 생략<br>③전문대학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, 부교수로 겸보한다.(2009.2.27개정) | **제73조(총장 등)** ① 생략<br>② 생략<br>③전문대학에 ~~1인의~~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, 부교수로 겸보한다.(2009.2.27.개정)(2017.4.21.개정) |
| **제74조(하부조직)** ①전문대학에 기획실, 교학처, 교학지원처, 산학협력단을 둔다.(98.9.5개정) (04.09.30 개정)(2006.11.24 개정)(2008.1.2 개정)(2008.2.28 개정)(2009.2.27.개정)(2012.9.1. 개정)<br>②총장을 보좌하고, 제1항의 하부조직을 총괄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.(98.9.5개정) (2006.11.24 개정)(2009.2.27개정)<br>③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겸보하고 기획실장, 교학처장,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, 교육지원처장은 참사로 보한다. (98.9.5 개정)(04.09.30 개정)(2006.11.24 개정)(2008.1.2 개정)(2008.2.28 개정)(2009.2.개정)(2012.2.8 개정)(2012.9.1.개정) | **제74조(하부조직)** ①전문대학에 기획, 교무학사, 회계, 산학협력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부조직을 둔다. 조직의 개편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한다.(98.9.5개정)(04.09.30 개정)(2006.11.24 개정)(2008.1.2 개정)(2008.2.28 개정)(2009.2.27.개정)(2012.9.1. 개정)(2017.4.21. 개정)<br>② 생략<br>③하부조직을 관장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에 각각 장을 두며, 해당 조직의 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.(98.9.5개정) (04.09.30개정) (2006.11.24개정)(2008.1.2개정)(2008.2.28개정)(2009.2.개정)(2012.2.8개정)(2012.9.1.개정)(2017.4.21.개정) |
| **제75조(부속시설)** ① 생략<br>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(2009.2.개정)<br>③생략<br>④생략 | **제75조(부속시설)** ① 생략<br>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.(2009.2.개정) (2017.4.21.개정)<br>③생략<br>④생략 |
| **제76조(도서관)** ①도서관에 수서과,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참사로 보하고,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.<br>②생략 | **제76조(도서관)** ①도서관의 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며,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소속 직원을 두어 수서와 열람 업무를 관장한다. (2017.4.21.개정)<br>②생략 |

| 간서명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
# 임원 개선 내역

| 연번 | 직 위 | 성 명 | 생년월일 | 임기 | 개선내역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이사장 | 정희경 | 1932. 5. 24 | 승인일로부터 4년 | 중임 | 이사장 교육이사 |
| 2 | 이사 | 구성회 | 1936. 12. 20 | 승인일로부터 4년 | 〃 | 교육이사 |
| 3 | 이사 | 이병훈 | 1962. 6. 28 | 승인일로부터 4년 | 〃 | |
| 4 | 이사 | 임청산 | 1942. 9. 29 | 승인일로부터 4년 | 〃 | 교육이사 |
| 5 | 이사 | 이선호 | 1957. 2. 16 | 승인일로부터 4년 | 신임 | 교육이사 |
| 6 | 이사 | 이장우 | 1953. 4. 19 | 승인일로부터 4년 | 신임 | 개방이사 교육이사 |

| 간서명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
|---|---|---|---|
| | 구성회 | 임청산 | 장지환 |